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05
----------	-------

발의연월일 : 2025. 7. 24.

발 의 자 : 김민전 · 인요한 · 조배숙
이종배 · 강선영 · 정성국
서천호 · 김상훈 · 박충권
신성범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투표용지는 접어 투표함에 넣고 투표함의 인계 시 경찰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하며, 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투표방식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또는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투표함을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재질로 작성하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어 이를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등 프랑스의 투표방식을 채택하여 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함(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포함)은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고 견고한 재질로 작성되어야 하며, 투표봉투 또는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을 때마다 그 수가 자동으로 집계되는 장치가 부착되어야 함(안 제151조제9항 신설).

나.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투표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은 후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봉투를 투표함에 넣도록 함(안 제157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투표함(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을 포함한다)은 내부가 보이는 투명하고 견고한 재질로 작성되어야 하며, 투표봉투 또는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을 때마다 그 수가 자동으로 집계되는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제157조제1항 중 “투표용지”를 “투표용지와 투표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投票用紙”를 “투표용지와 투표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投票用紙”를 “투표용지와 투표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投票用紙”를 “투표용지와 투표봉투”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投票函에 넣어야 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봉투에 넣은 후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봉투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投票用紙”를 “투표용지와 투표봉투”로 한다.

제15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전단 중 “제3항 및 제4

항”을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를 “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 따라 회송용 봉투 대신 투표봉투를 투표용지와 함께 교부하여”로 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 대신 투표봉투를 투표용지와 함께 교부한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송용 봉투 대신 투표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은 후 사전투표함에 투표봉투를 넣어야 한다.

제179조제1항제1호 중 “正規의 投票用紙”를 “정규의 투표용지 또는 투표봉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⑧ (생략) <u><신설></u>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투표함(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을 포함한다)은 내부가 보이는 투명하고 견고한 재질로 작성되어야 하며, 투표봉투 또는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을 때마다 그 수가 자동으로 집계되는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u>
⑨ (생략)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 ----- ----- ----- ----- ----- ----- ----- ----- ----- -----

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② 투표관리관은 選舉日에 選舉人에게 投票用紙를 교부하는 때에는 私印捺印欄에 私印을捺印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枚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私印을 미리捺印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투표관리관은 身分證明書を 제시하지 아니한 選舉人에게 投票用紙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選舉人은 投票用紙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投票用紙에 1인의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政黨을 말한다)를 選擇하여 投票用紙의 해당 欄에 記票한 후 그 자리에서 記票內容이 다른

투표용지와 투표봉투

② 투표용지와 투표봉투

③ 투표용지와 투표봉투

④ 투표용지와 투표봉투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
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投票
函에 넣어야 한다.

⑤ 投票用紙를 교부받은 후 그
選舉人에게 責任이 있는 사유
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 ~ ⑧ (생략)

제158조(사전투표) ① . ② (생략)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후단 신설>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
니하게 접어 투표봉투에 넣은
후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
봉투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투표용지와 투표봉투-----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58조(사전투표)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

-----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 대신 투표봉투를 투표용
지와 함께 교부한다.

④ _____

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
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
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
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
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
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
에 넣어 봉합한 후 사전투표함
에 넣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⑤ (생략)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
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

----- . 이 경우 제3항 후
단에 따라 회송용 봉투 대신
투표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
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봉투
에 넣은 후 사전투표함에 투표
봉투를 넣어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1.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⑦ · ⑧ (생략)

제179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한다.

1. 正規의 投票用紙를 사용하지

-----.

-----.

2. 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 따라 회송용 봉투 대신 투표 봉투를 투표용지와 함께 교부하여-----

-----.

-----.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179조(무효투표) ① -----

-----.

1. 정규의 투표용지 또는 투표

아니한 것	<u>봉투</u> -----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